



문정출력용바코드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4카합10072 방해금지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케이비알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23 (웅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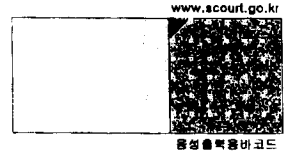
대표이사 이종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근수, 박정미

채 무 자

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케이비알지회
2. 박태인
3. 유해종
4. 주형환
5. 김두룡





6. 한성일

7. 한창복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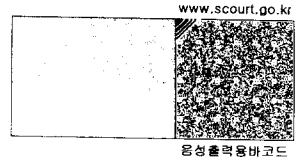
주 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은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채권자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의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금속가공기계 등의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채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케이비알지회(이하 '채무자 지회'라고 한다)는 채권자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채무자 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이하 '나머지 채무자들'이라 한다)은 채무자 지회의 지회장 및 간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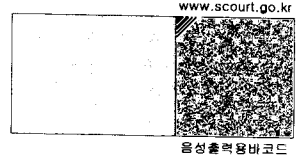
나. 채권자는 2012. 9. 12. 주식회사 삼경오토텍(이하 '삼경오토텍'이라 한다)에게 채권자 소유인 이 사건 기계 등을 매각한 후 인도하려고 하였는데, 채무자 박태인, 유해종, 주형환, 한성일 등이 이를 방해하자, 채권자와 삼경오토텍은 2012. 12. 13. 위 채무자들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기계 등의 반출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2012카합672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3. 2. 12.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기계 등을 매각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기계 등의 반출을 저지하는 행위가 정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와 삼경오토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채권자와 삼경오토텍은 2013. 3. 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고하였다(2013라19호).

라. 채권자는 2013. 6. 5. 채무자 지회의 상위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채무자 지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2013. 6. 13. 위 항고 사건을 취하하였다.

1. 고용안정 관련





1-2. 회사(채권자)는 보유 중인 설비를 매각 또는 이전하지 않는다.

회사는 삼경오토텍과 계약 체결한(2012. 9. 12.) 기계 매매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반출된 열처리설비 3대는 본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반환조치 한다. (이하 생략)

2. 임금 및 성과금 관련

2-1. 조합(채무자 지회)은 물가상승율, 회사의 경영실적, 관계사 임금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2-2. 회사는 당해연도 경상이익율에 따라 결산 보고 후 다음과 같이 경영 성과금(기본금 기준)을 지급한다.

- 경상이익율 6% 이상 ~ 10% 미만 : 100%
- 경상이익율 10% 이상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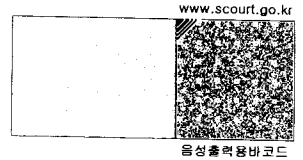
본 합의서는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본 합의 노사 당사자는 본 합의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채권자는 2014. 7. 8. 삼경오토텍에게 이 사건 기계를 5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5.까지 이 사건 기계를 삼경오토텍의 공장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하자, 채무자들은 이 사건 기계의 반출을 저지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기계 반출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 1-2항에 따라 이 사건 기계 반출의 방해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거나 이전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들은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매각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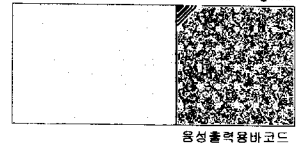




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① 이 사건 기계의 반출은 채권자의 경영권인 소유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기계는 2012년 9월경부터 작동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계의 처분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②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기계의 매각과 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이 사건 합의 1-2항은 채권자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며, ③ 설령 이 사건 합의 1-2항의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이후 채무자들이 이 사건 합의 2-1항 및 2-2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사내 노동가 방송 중지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경영악화를 타개하고자 유희기계인 이 사건 기계의 가동을 위한 외주도급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며 파업을 하는 등 이 사건 합의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채권자에게 그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합의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참고), 채무자들이 이 사건 기계의 반출을 지속적으로 저지하고 이를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은 점, 이 사건 기계의 규모, 작업내용, 작동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의 매각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작업량,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합의 1-2항은 채권자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내용 중 처분권만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그 기간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년 또는 2년 3개월로 한정되고, 양도담보설정 등 이 사건





음성출력용바코드

기계의 반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처분행위도 가능하며, 이 사건 합의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기계의 반출을 제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때에는 채권자가 이 사건 합의 1-2항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 1-2항이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수준이나 경영악화의 정도가 이 사건 합의 1-2항의 제한을 배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채권자에게 이 사건 합의 1-2항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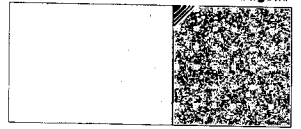
2014. 11. 11.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박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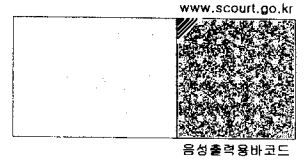


음성출력용바코드



판 사 지 은 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46-1 제1호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건조장 202㎡, 같은 단층 단층폐기물고 230㎡
같은 단층창고 24.50㎡, 같은 단층창고 16.80㎡
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46-1 제1동호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및 판넬지붕 단층 공장 13786.6㎡, 지하 90㎡
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46-1 제2호동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트레이닝 센터
1층 997.92㎡, 2층 906.75㎡, 3층 43.2㎡, 지하 291.6㎡
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46-1 제3동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수위실 60.28㎡
5. 경상남도 창원시 웅남동 46-1 제4호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3693.29㎡, 1층 844㎡





음성출력용바코드

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46-1 제5동호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1714.50㎡, 1층 2187㎡, 1층 432㎡

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46-1 제6호동호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지붕 4층 공장(사무실)

1층 317.94㎡, 2층 208㎡, 2층 108㎡, 3층 202㎡

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46-1 제9동호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지하1층 87.6㎡, 1층 63.58㎡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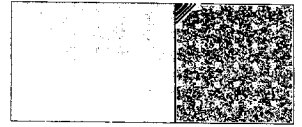


별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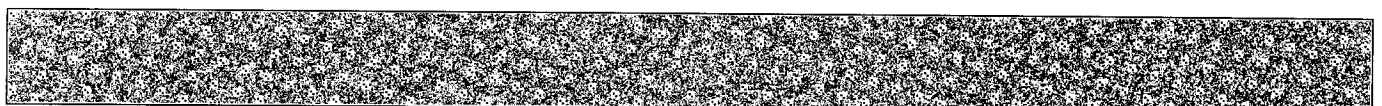
기계기구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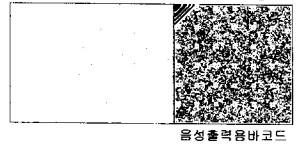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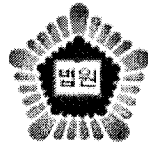
구분	순번	설비명	설비 NO	수량	반출전설치위치
압조 공정	1	강구압조기	BH-141	1대	압조공실
	2	강구압조기	BH-111	1대	압조공실
	3	강구압조기	BH-081	1대	압조공실
	4	강구압조기	BH-081	1대	압조공실
	5	강구압조기	BH-081	1대	압조공실
	6	강구압조기	RH-101	1대	압조공실
	7	강구압조기	BH-145	1대	압조공실
생연 공정	1	강구생연기	BFG-31	1SET	생연공실
	2	강구생연기	BFG-32	1SET	생연공실
	3	강구생연기	NBF-02	1SET	생연공실
	4	강구생연기	NBF-04	1SET	생연공실
	5	강구생연기	NBF-08	1SET	생연공실
	6	강구생연기	NBF-12	1SET	생연공실
	7	강구생연기	NBF-15	1SET	생연공실
	8	강구생연기	NBF-18	1SET	생연공실
	9	강구생연기	NBF-19	1SET	생연공실
	10	강구생연기	NBF-20	1SET	생연공실
	11	강구생연기	NBF-22	1SET	생연공실
	12	강구생연기	NBF-23	1SET	생연공실
	13	강구생연기	NBF-24	1SET	생연공실
	14	강구생연기	NBF-25	1SET	생연공실
	15	강구생연기	NBF-32	1SET	생연공실
	16	강구생연기	NBF-33	1SET	생연공실
열처리 공정	1	강구열처리기	BHQ-7	1SET	열처리공실
	2	강구열처리기	BHQ-9	1SET	열처리공실
	3	강구열처리기	BHQ-10	1SET	열처리공실
	4	템퍼링로	BHT-16	1SET	열처리공실
	5	템퍼링로	BHT-17	1SET	열처리공실
	6	템퍼링로	BHT-18	1SET	열처리공실
	7	템퍼링로	BHT-19	1SET	열처리공실
	8	템퍼링로	BHT-20	1SET	열처리공실
	9	템퍼링로	BHT-21	1SET	열처리공실
	10	세척기	BW-04	1대	열처리공실
연마 공정	1	강구연마기	BGN-01	1SET	연마공실
	2	강구연마기	BGN-02	1SET	연마공실
	3	강구연마기	BGN-03	1SET	연마공실
	4	강구연마기	BGN-04	1SET	연마공실
	5	강구연마기	BGN-05	1SET	연마공실
	6	강구연마기	BGN-06	1SET	연마공실
	7	강구연마기	BGN-07	1SET	연마공실





구분	순번	설비명	설비 NO	수량	반출전설치위치
L2 공정	1	강구래핑기	BL2N-31	1SET	L2공실
	2	강구래핑기	BL2N-32	1SET	L2공실
	3	강구래핑기	BL2N-33	1SET	L2공실
	4	강구래핑기	BL2N-34	1SET	L2공실
	5	강구래핑기	BL2N-35	1SET	L2공실
	6	강구래핑기	BL2N-36	1SET	L2공실
	7	강구래핑기	BL2N-37	1SET	L2공실
	8	강구래핑기	BL2N-38	1SET	L2공실
	9	강구래핑기	BL2N-39	1SET	L2공실
	10	강구래핑기	BL2N-40	1SET	L2공실
	11	강구래핑기	BL2N-41	1SET	L2공실
	12	강구래핑기	BL2N-42	1SET	L2공실
	13	강구래핑기	BL2N-43	1SET	L2공실
	14	강구래핑기	BL2N-44	1SET	L2공실
	15	강구래핑기	BL2N-45	1SET	L2공실
	16	강구래핑기	BL2N-46	1SET	L2공실
	17	강구래핑기	BL2N-47	1SET	L2공실
	18	강구래핑기	BL2N-48	1SET	L2공실
	19	강구래핑기	BL2N-49	1SET	L2공실
	20	강구래핑기	BL2N-50	1SET	L2공실
	21	강구래핑기	BL2N-51	1SET	L2공실
	22	강구래핑기	BL2N-52	1SET	L2공실
	23	강구래핑기	BL2N-53	1SET	L2공실
	24	강구래핑기	BL2N-54	1SET	L2공실
	25	강구래핑기	BL2N-55	1SET	L2공실
	26	강구래핑기	BL2N-56	1SET	L2공실
	27	강구래핑기	BL2N-57	1SET	L2공실
	28	강구래핑기	BL2N-58	1SET	L2공실
세척공정	1	초음파세척기	BSW-05	1SET	초음파세척실
선별 공정	1	강구자동선별기	BSM-02	1대	자동선별실
	2	강구자동선별기	BSM-03	1대	자동선별실
	3	강구자동선별기	BSM-04	1대	자동선별실
	4	강구자동선별기	BSM-05	1대	자동선별실
	5	강구자동선별기	BSM-06	1대	자동선별실
	6	강구자동선별기	BSM-07	1대	자동선별실
	7	강구자동선별기	BSM-12	1대	자동선별실
	8	강구자동선별기	BSM-13	1대	자동선별실
	9	강구자동선별기	BSM-16	1대	자동선별실
	10	강구자동선별기	BSM-19	1대	자동선별실
	11	강구자동선별기	BSM-39	1대	자동선별실
	12	강구자동선별기	BSM-40	1대	자동선별실
	13	강구자동선별기	BSM-41	1대	자동선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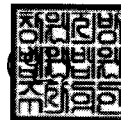


정본입니다.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

법원주사 이형기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